

의안번호	2220365
의 퇴 인	김동아의원
회 답 일	2026.9.23.
추 계 번호	26F487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세제지원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을 5%에서 10%로 상향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○ 재정수입 감소는 2028~2029년 2년간 총 1,556억원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누적	연평균
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 상향조정 (안 제13조의2)	-778	-778	-1,556	-77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(안 제13조)	○ 과세특례 적용 대상을 전문 투자기관에서 일반 내국법인으로 확대 - (현행) 벤처투자회사·창업기획자·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기업·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- (개정안) 일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창업기업·벤처기업·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 비과세
2	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(안 제13조의2)	○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- 내국법인이 창업기업·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%에서 10%로 상향조정 -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 및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창업기업·벤처기업 등에 간접 출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%에서 10%로 상향조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(안 제13조)	X	기술적 사유로 비용추계 곤란
2	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(안 제13조의2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(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을 반영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출자분부터 적용되며, 현행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7~2028년 출자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 연도 신고·납부 시점인 2028~2029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-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대상을 일반 내국법인까지 확대(안 제13조)하는 데 따른 세수효과는 자료의 한계로 추계 곤란
 -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적용 대상이 벤처투자회사·창업기획자·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전문 투자기관에서 일반 내국법인까지 확대됨
 -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 내국법인의 창업·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출자 규모, ② 이 중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, ③ 투자주식의 향후 처분 규모 및 시점, ④ 실제 양도차익률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, 관련 자료가 부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개요)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내국법인이 창업기업·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, 취득가액의 5%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

○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·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5%에서 10%로 상향조정

□ (감면실적) 최근 5년(2022~2026년)간 감면 실적은 총 2,814억원(연평균 563억원) 규모

[표 2]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실적:
2022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(잠정)
법인세	676	652	533	564	389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

□ 향후 출자규모 등 공제대상 규모는 2026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개정안에 따른 공제율 증가분을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
○ 최근 조세지출 실적이 2022년 676억원에서 2026년 389억원으로 점차 축소된 점을 고려하여, 향후 출자규모 등 공제대상 규모는 2026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○ 여기에 공제율이 현행 5%에서 10%로 두 배 상향되는 점을 반영하여,

개정 이후 감면액은 2026년 실적의 두 배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

-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·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5%에서 10%로 상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8~2029년 2년간 총 1,556억원으로 예상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누적	연평균
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 상향조정 (안 제13조의2)	-778	-778	-1,556	-778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지원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839	jwpark1209@assembly.go.kr